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72

발의연월일: 2025. 6. 4.

발 의 자:차규근・김재원・정춘생

서왕진 · 김선민 · 신장식

강경숙 • 이해민 • 김준형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그로 인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예산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에 종속되는 '기재부의 나라'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 또한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여 국내금융 정책까지 다루도록 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 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제1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예산처) 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둔다.

② 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획 재정부"를 "재무부"로 한다.

1. 재무부

제27조의 제목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 과관리, 화폐"를 "화폐"로, "국제금융"을 "국내금융·국제금융"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항·제7항 및 제9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4조	예산처장관
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예산시경단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7조	재무부장관
제1항에 규정된 사무	/개구구경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소관사무 중 국내금융에	재무부장관
관한 사무	イナイガゼ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기 취 게 거 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	또는	예
기획재정부	산처						
그 이 이 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	또는	금
금융위원회	융감독위원회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대통령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직 등) ① (생 략)	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	②
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	
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	
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4.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	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u>용위원회</u>	<u>금융감독위원회</u>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무회의) ① (생 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
	유)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②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u> 이 겸임	<u>재무부장관</u>
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	
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제19조(부총리) ① · ② (생략)

- ③ 부총리는 <u>기획재정부장관</u>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 ④ <u>기획재정부장관</u>은 경제정책 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 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한다.
- ⑤ (생략)
-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 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u>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 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예산처) ① 예산·기금
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
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둔다.
② 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
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9조(부총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재무부장관</u>
④ <u>재무부장관</u>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u>재무부장관</u>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 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기획재정부

- 2. ~ 19. (생략)
-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 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 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 으로 한다. 다만, <u>기획재정부</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 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생 략)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 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경제·재정정책의 수립· 총괄·조정,예산·기금의 편성 ·집행·성과관리,화폐·외환

제26조(행정각부) ①
-, 1 -N T H
1. 재무부 2 10 (청체과 가오)
2. ~ 19. (현행과 같음) ②
<i></i>
재무부
· <u>-7 1 1</u>
<u>.</u>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u>(재무부)</u> ① <u>재무부장관</u>
- <u>화폐</u>
국내금융·국제금

·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	•
관세· <u>국제금융</u> , 공공기관	관
리, 경제협력 · 국유재산 · 민	간
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	무
를 관장한다.	

- ② <u>기획재정부</u>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장관</u>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 ④ (생 략)
-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장관</u>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 ⑥ (생략)
-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 ⑧ (생 략)
-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

<u>\odot</u>
<u>.</u>
·
② <u>재무부</u>
<u>.</u>
③
<u>재무부장관</u>
④ (현행과 같음)
⑤
27.2.2.2
<u>재무부장관</u>
<u>.</u>
⑥ (현행과 같음)
⑦
재무부장관-
⑧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u>	<u>재무부장관</u> -
<u>부장관</u>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	
다.	
⑩ (생 략)	① (현행과 같음)